

2023년도 제1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25.(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홍지만(분과위원장), 김민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75)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김태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25건(안전번호 제2023-105377호~108401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05377호는 ★★★ 카페에서 이메일로 불법복제물을 배포한 사안으로 게시자가 본문 및 댓글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배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점,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한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05378호~105395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05396호~105407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05408호~105431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05432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05433호~105456호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287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52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3-16145호~16664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52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7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A 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는 '댓글로 전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실무진이 댓글을 작성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어디에 해당 하는가?
- 김준근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을 보면 게시자가 댓글로 '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다른 이용자가 '쪽지 드릴게요' 등 댓글로 확인 할 수 있음.
- B 위원: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카페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게시자에게 하는가?
- 김준근 주임: OSP에 시정권고를 하면 OSP가 조치를 하고 게시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0537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B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5377호는 게시자가 본문 및 댓글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배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점,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한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05378호~10539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만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05378호~105395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5378호~10539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05396호~10540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게시물은 매주 심의요청이 있는 것인가? 그 정도로 양이 많은가?

- 김준근 주임: 온라인보호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의요청을 하고 있으며, 요일에 따라 분과별로 나누어 심의하고 있음.
- C 위원: 관세청에서 통관 금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이숙형 부장: 방송사 등을 통해 관세청도 이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05396호~10540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05396호~105407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05408호~10543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뮤지컬 교환·판매 글은 주로 ★★★ 블로그에만 올라오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 블로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
- 이숙형 부장: 지속적으로 시정권고를 하여 오픈 채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블로그에 오픈채팅 주소를 게시하므로 블로그 계정에 대해 조치하면 됨. 뮤지컬 제작 협회에서 블로그의 계정에 대해 ★★★에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05408호~10543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B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5408호~10543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0543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0543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0543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05433호~105456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만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05433호~10545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5433호~10545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05457호~108401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출판/어문, 기타, 일반영상, 만화/웹툰, 방송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3-105469호(“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는 2023.06.28.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40포인트에 판매중임.
(“귀공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05486호(“귀공자”)

는 2023.06.21. 공개한 한국영화로 밴드에서 배포중임.

(‘명탐정코난: 하이바라 아이 이야기 ~흑철의 미스터리 트레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2023-106783호(‘명탐정코난: 하이바라 아이 이야기 ~흑철의 미스터리 트레인’)는 2023.06.23. 공개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210포인트에 판매중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105457호~10840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105457호~10840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05377호, 제2023-105378호~105395호, 제2023-105396호~105407호, 제2023-105408호~105431호, 제2023-105432호, 제2023-105433호~105456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05457호~10840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145호~16664호(순번 1번~520번)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8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8. 1.

분과위원장 홍지만

위원 김민아

위원 한승원